

준 비 서 면

사 건 2000가합0000 임차보증금반환

원 고 000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 주장에 대한 답변

-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피고로부터 임차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해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소외 ◉◉◎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나. 그러나 원래 피고는 19○○. ○. ○. 소외 ●●●에게 금 504,000,000원에 이사건 주택이 포함된 연립주택(○○빌라)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는바, 그 공사가 완공된 뒤에도 그 공사대금 중 금 273,537,40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 ○. ○. 위 연립주택 중 제101호(이 사건 주택)와 제102호에 대하여 소외 ●●●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인데, 원고는 소외 ●●●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 ○. ○.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은 금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보증금을 완불한 뒤 20○○. ○. ○.에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표현대리

가. 설사 소외 ◉◉◉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할 권리만 있을 뿐이고 이를 임대할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①소외 ◉◉◉에게 기본대 리권이 존재하고, ②상대방으로서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함께 모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민법 제126조 표현대 성립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즉, 피고는 소외 ���에게 이 사건 주택의 분양대리권을 준 것이고 분양 대리권에는 당연히 임대할 대리권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소외 ���에게 분양권을 주는 각서를 만들어 교부하였고 소외 ���는 자신에게 임대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였는바, 위 인증서를 확인한 원고로서는 소외 ���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음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인즉, 소외 ���의 대리행위가 설사 무권대리라고 할지라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2000. 0. 0.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수 1 대한법률구조공단	
₹.	//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기간	제소 후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부수	준비서면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제출의무	지방법원 합의부와 그 이상의 상 급법원에서는 반드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변론을 준비하여야 함 (민사소송법 제272조 제2항).
의 의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기	- 변론에서 ㅎ	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하여		
기 재 사 항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에 법정되어 있음> 1.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효 과	자백간주이익(민사소송	실권효의	제1항), 진술의제의 이익(민사소 배제(민사소송법 제285조 제3항), 6조 제2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변론과 그 준비 >> 준비서면